

안산시 지방재정 투·융자사업 심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의안 번호	2466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13 . 11. 14.
제 출 자 : 안 산 시 장

제안이유

- 「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규칙」 일부 개정(2013.6.5 시행)에 따라 지방재정 투·융자사업의 심사절차 등 상위 법령과 중복되는 부분을 삭제하고 일부 개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항임.

주요내용

- 투융자사업 심사대상 기준액 변경 및 기준삭제(안 제2조, 제3조, 제5조, 제7조)
 - 지방재정투·융자사업 심사의 기준·대상 및 제심사 등을 「지방재정투·융자 심사규칙」을 따르도록 함.
- 투자심사 절차 개정(안 5조)
 - 상위법과 중복되는 부분 삭제

개정조례안 : 불입

관계법령발췌서 : 불입

- 지방재정법 제36조 및 동시행령 제41조
- 지방재정 투·융자사업 심사 규칙

관련사업계획서 : 해당없음

예산수반사항 : 해당없음

사전예고(결과) : 의견없음

- 2013. 10. 1. ~ 10. 20.(20일간)

기타 참고사항 : 불입

- 조례 일부개정 방침 문서

안산시 지방재정 투·융자사업 심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안산시 지방재정 투·융자사업 심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2조(투자심사 대상 및 기준 등) 지방재정 투·융자사업(이하 “투자사업”이라 한다) 심사의 기준·구분·절차·재심사 등은 「지방재정투·융자심사규칙」 제2조부터 제4조까지 및 제6조를 따른다.

제3조를 삭제한다.

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

제5조(투자심사의 요청) ①사업주관 부서의 장 또는 「안산시 재무회계 규칙」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제1관서의 장(이하 “심사의뢰자”라 한다)은 투자사업 중 제2조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투자심사 주관부서의 장에게 심사를 의뢰하여야 한다

② 투자심사 의뢰서에는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.

1. 단위사업계획서
2. 투자우선 순위표
3. 회계별 가용재원 판단서
4. 그 밖에 투자심사에 필요한 자료

제6조제1항 중 “제3항”을 “제2항”으로 한다.

제7조를 삭제한다.

제9조 중 제4호를 제5호로 하고,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4. 특별교부세의 교부 신청

제10조 제목 중 “사후효과의 분석”을 “사후평가 등”으로 하고, 같은조 제1항과 제2항 중 “사후효과 분석”을 “사후평가 등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소관 실·과		예산과
입 안 자	실·과장 직위·성명	예산과장 박 미 라
	담당·팀장 직위·성명	건전재정계장 구 병 화
	담 당 자 성명·전화	고명화 (행정 3029)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>제2조(투자심사대상)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정투·융자(이하 “투자사업” 이라 한다)에 대해서는 그 사업의 필요성 및 사업획의 타당성 등에 대한 심사를 하여야 한다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총사업비 10억원 이상 신규투자사업 2. 총사업비 3억원 이상 행사성 사업 3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<p>②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서 정한 심사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 할 수 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법령 또는 국가관련 사업계획에 의하여 확정된 사업 2. 재해복구 등 원상복구를 의하여 확정된 사업 3. 「지방재정 투·융자사업 심사규칙」 제3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한 사업 	<p>제2조(투자심사 대상 및 기준 등) 지방재정 투·융자사업(이하 “투자사업” 이라 한다) 심사의 기준·구분·절차·재심사 등은 「지방재정투·융자 심사규칙」 제2조부터 제4조까지 및 제6조를 따른다.</p>
<p>제3조(투자심사기준) 이 조례에 따른 투자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투자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2. 중장기지역계획 및 중기 지방재정계획과의 연계성 3. 소요자금의 조달 또는 원리금의 상환 능력 4. 재정적·경제적 효율성 등 	<p>(삭 제)</p>

제5조(투자심사의 절차) ① 투자심사는 다음 회계연도부터 시행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하되, 해당 사업의 실시설계 용역전에 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한 시의 시책사업을 추진하거나 연도 중에 사업을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회계연도의 사업에 대하여도 이를 실시할 수 있고, 매년 또는 격년제로 개최되는 행사성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비가 직전 대비 20퍼센트 이상 증액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3년마다 투자심사를 실시한다.

② 투자심사는 매년 3회로 나누어 실시되, 1차 심사는 3월31까지, 2차 심사는 7월31일까지, 3차 심사는 10월 31까지 완료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심사를 할 수 있다

③ 사업주관 실·과·소장(이하 “심사의뢰자”라 한다)은 투자사업 중 제2조 및 제7조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업무담당과장에게 투자심사를 의뢰하여야 한다

④ 투자심사의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.

1. 단위사업계획서
2. 투자우선순위표
3. 회계별 가용재원판단서
4. 그 밖에 투자심사 및 분석에 필요한 자료

제6조(투자심사결과의 통보 등) ① 제5조 제3항에 따른 심사의뢰서를 접수한 업무담당과장은 투자심사를 한후에 종합평가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고하고, 그결과를 심사의뢰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

②. ~ ③. (생략)

제5조(투자심사의 요청) ① 사업주관 부서의 장 또는 「안산시 재무회계 규칙」 제2조 제1항제3호에 따른 제1관서의 장(이하 “심사의뢰자”라 한다)은 투자사업 중 제2조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투자심사 주관부서의 장에게 심사를 의뢰하여야 한다

② 투자심사 의뢰서에는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.

1. 단위사업계획서
2. 투자우선 순위표
3. 회계별 가용재원 판단서
4. 그 밖에 투자심사에 필요한 자료

제6조(투자심사결과의 통보 등) ① -----
제2항-----

②. ~ ③. (현행과 같음)

제7조(재심사)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의 타당성 여부 등에 대한 투자심사를 다시 하여야 한다.

1. 투자심사 후 사업비가 50퍼센트 미만 늘어난 사업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업

2. 투자심사 후 사업비가 50퍼센트 미만 늘어난 사업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업

가. 자체심사 투자사업 중 투자심사 후 사업비가 10억원 이상 늘어난 사업

나. 도 의뢰심사 투자사업 중 투자심사 후 사업비가 300억원 이상 늘어난 사업

3. 투자심사 후 3년 이상 사업추진이 지연되거나 보류된 사업

제9조(지방재정관리계획과의 연계운영) (생략)

1. ~ 3. (생략)

(신설)

4. (생략)

제10조(사후효과의 분석) ① 시장은 투자가 완료된 주요사업에 대하여 사후효과 분석을 실시하여 분석결과를 차후 투자심사에 반영하고 투자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사후효과 분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심사의뢰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

(삭제)

제9조(지방재정관리계획과의 연계 운영) (현행과 같음)

1. ~ 3(현행과 같음)

4. 특별교부세의 교부 신청

5. (현행과 같음)

제10조(사후평가 등)①-----

-----사후평가 등-----

② -----사후평가 등-----